"국민들의 미세먼지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!"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

2017. 9. 26.

관계부처 합동

국 무 조 정 실 기 획 재 정 부 교 육 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 교 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 건 복 지 부 환 경 부 국 토 교 통 부 해 양 수 산 부 산 림 청

목 차

l. 그간의 경과 ······· 1
II. 우리나라의 현황 및 여건 ······ 2
Ⅲ. 종전대책의 반성 및 평가 5
IV. 종합대책의 방향 및 추진체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V. 중점 추진과제
VI. 이행점검 · 평가 ······ 32

Ⅰ □ □간의 경과

- ☐ '16.6.3일 관계부처 합동「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」수립·추진
 - 특별대책에도 불구, 금년초 고농도 빈발 등으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음
- □ '17.5월 새정부 출범시,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
 - '3호 업무지시('17.5.15)'를 통해 미세먼지 응급대책으로서 노후 화력 셧다운('17.6월 한달), 미세먼지 대책 기구 설립을 지시
 - **공약**에서도 미세먼지 문제 해결의 기본방향을 제시

<미세먼지 관련 공약 사항>

- 임기 내에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% 감축 추진 : 발전소, 경유차 대책 등
-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: 기준강화, 취약계층 보호 등
- ○「미세먼지 대책기구」 설치 : 대책 수립, 이행점검 등
- 한중 정상외교의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을 추진 : 협력강화 등
- □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 **합동 TF 구성·운영**(5.25~)
 - 기재부·산업부·환경부·국토부 등 **4개 주요부처** 참여 ※ 교육부, 과기정통부, 외교부, 보건복지부, 해수부 등 관계부처도 실무적으로 참여
 - 그간 **3차례** TF **회의 및 3차례 실무협의**를 통해 종전 대책의 미흡 했던 점,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, 대책안 마련
- □ 시민사회,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수렴도 병행(6.27~7.5, 총 3회)
 - 시민사회는 소통을 통한 국민 공감대 확보, 학생·어르신 등 민감계층 보호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
 - **전문가**는 국내 배출원 관리 필요성, 지자체는 사업장 관리 강화 및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

우리나라의 현황 및 여건

1. 미세먼지 오염도

 \pro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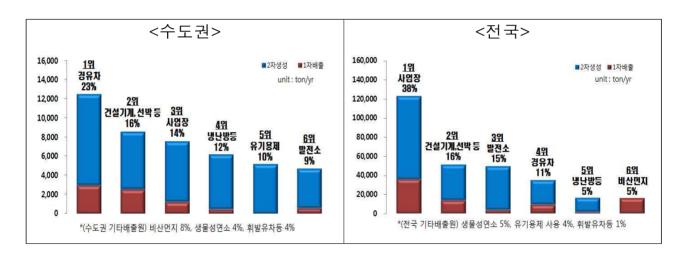
- □ PM₁₀의 연평균 오염도는 최근 정체 상황
 - 서울의 오염도*는 '12년까지 개선 추세, 이후 악화 또는 정체로 전환
 * 61('04) ⇒ 41('12) ⇒ 46('14) ⇒ 48µg/m³('16)
 - PM₁0 전국 평균 농도(47μg/m³) 대비 수도권(51μg/m³)의 오염도 높음
- - **16년 평균 농도**(전국, 서울 모두 26μg/m³)는 **WHO 권고기준**(10μg/m³), **선진 주요도시**(도쿄 13.8, 런던 11μg/m³, ´15) 대비 **2배** 높음
 - 수도권 포함 전북, 강원의 오염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수준
- □ 인체 위해성이 더 큰 PM_{2.5}의 경우, 최근 고농도 발생 빈번
 - 봄・겨울철의 PM_{2.5} 평균농도 상승, 주의보 발령횟수도 증가
 ※ 평균 PM_{2.5} 농도(1~5월): '15년 28 → '16년 29 → '17년 30µg/m³
 주의보·경보 발령 횟수(1~5월): '15년 72 → '16년 66 → '17년 92회
 - 전북, 경북, 충남·북의 나쁨일수(PM₂)는 전국 평균 대비 약 2~3배 높은 수준

< '16년 시·도별 미세먼지 농도 >



2. 국내배출과 국외영향

- □ (전체) 배출원은 크게 국내배출과 국외영향으로 구분 가능
- □ (국내배출) 대도시 지역과 전국으로 나눠볼 때, 대도시는 경유차가, 전국적으로는 사업장이 배출량이 큰, 1순위 배출원(14년 PM₂₅ 배출량)
 - **(수도권)** <u>경유차(23%)</u> 〉 건설기계·선박 등(16%) 〉 사업장(14%) 順
 - **(전 국) <u>사업장(38%)</u> >** 건설기계·선박 등(16%) > 발전소(15%) 順



- □ (국외영향) 국외영향의 비율은 계절, 기상조건에 따라 상이
 - (정부) 평상시 중국, 북한 등을 포함한 국외영향은 연평균 30~50%, 고농도시(~15~~16년 연간 18~29일)에는 60~80%로 추정
 - 美 항공우주국(NASA)과의 공동연구 결과(´17.7월, 중간 발표)도 중국 등 **국외영향 48%, 국내배출 52%로 분석**(측정시점 : ´16.5~6월)
 - (서울시 등) 다양한 연구결과가 있으나, 정부 발표와 크게 다르지 않음
 - 서울시(17.4월 발표)는 서울지역의 국외 영향을 55%(15~16년 국내·외자료 활용), 일부 환경 전문가는 최대 70% 육박(고농도시)한다고 분석 ※ 국외영향은 배출량 자료, 미세먼지 농도 등에 따라 차이 발생

< 국내 미세먼지 감축의 중요성 >

- ◇ 사례 1: '17.6월 노후 석탄火電 가동중단(충남 4기)으로 오염도 개선
 - (측정 결과) 지난 2년(´15, ´16년)의 동기간 자료와 비교하면 충남지역 PM_{2.5} 농도 15.4%(4μg/m³) 감소(26 → 22μg/m³)
 - (모델링 결과) 충남지역 PM_{2.5} 농도는 1.1%(0.3 μ g/m³) 감소, 발전소 인근(30km)은 월 평균 3.3%(0.8 μ g/m³). 일 최대 8.6%(3.4 μ g/m³). 시간 최대 14.1%(9.5 μ g/m³) 감소
- ◇ 사례 2 : 일본 도쿄는 자체 저감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 크게 개선
 - (국외영향) 국외영향(중국, 한국 등)은 40~70%로 한국과 유사(16년, 日 환경성)
 - (저감 전략) '경유차 NO전략'(´00) 등을 통해 PM_{2.5} 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(´02년 27 → ´15년 13.8μg/m³)

3. 미세먼지 배출특성

- □ (전체) 미세먼지는 직접배출과 간접배출(2차 생성)*로 구분
 - * 황산화물(SOx). 질소산화물(NOx). 휘발성유기화합물(VOCs) 등이 미세먼지로 전환
- □ (비율) 간접배출이 전체 배출량의 72% 정도* 차지(전국 기준)
 - NASA와 공동연구시 미세먼지 성분분석(PM₁, 항공관측) 결과, 2차 생성 성분이 전체의 75% 이상인 것으로 조사('17.7월)
 - * '16.6.3에 기 분석·발표한 2차 생성비율(약 67%)보다 비중이 상승
 - 2차 생성 원인물질 중 SOx, NOx로 인한 생성량이 가장 많으며, NOx와 VOCs는 오존(○₃)생성 기여물질로 관리 필요성 높음

구분 합계		직접배출	간접배출 (2차 생성)				
⊤世	립계	(1차 배출)	소계	NOx	SOx	VOCs	
수도권	53,634톤	14,427톤	39,207톤	21,348톤	10,857톤	7,002톤	
十工也	(100%)	(27%)	(73%)	(40%)	(20%)	(13%)	
전국	324,109톤	91,460톤	262,649톤	90,416톤	118,418톤	23,817톤	
끄ᅩ	(100%)	(28%)	(72%)	(28%)	(37%)	(7%)	

- ▶ 국외영향 저감 노력과 더불어 국내감축 대책 필요
- ▶ 미세먼지를 고려한 대기오염물질(NOx, SOx 등)의 통합적 관리 필요

Ⅲ │ 종전대책의 반성 및 평가

- ① 그간 정책 추진과정에서 소통 부족
 - 미세먼지 문제는 산업계, 일반국민 등 사회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하나, 대책수립 및 집행 등 전 과정에서 의견수렴 미흡
 - 그간 정부의 주요정책도 경제·개발을 최우선적으로 고려*
 - * 저탄소차 협력금제 유예('14.9월), 영흥화력 7·8호기 신설논란('14~'15) 등
 - ▶ 미세먼지 정책 전 과정에서 국민참여 확대
- ②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있어 개별적 접근 실시
 - 미세먼지와 **기후변화·에너지** 정책 간의 **연계성 고려 미흡**
 - 전체 발생량의 72% **정도**를 차지하는 **2차 생성 미세먼지**에 대한 **저감대책 부족**
 - ▶ 통합적인 관점에서 미세먼지 관리 대책 수립 필요
- ③ 오염원 관리에 있어 다양한 한계점 노출
 - 대규모 사업장 감시수단(TMS) 부족(대형사업장 굴뚝의 3.3%), 소규모 사업장 관리 부실* 문제 등 오염원 관리 소홀
 - * 황 함량 초과 불법 면세유(B-C유) 사용 업체 적발(´16.5~6월, 경기 포천)
 - **폭스바겐 사건**(~15.9월)을 계기로 경유차의 인증조건 대비 **실제 도로 주행조건**에서의 질소산화물 **과다 배출 문제**가 제기
 - ▶ 대규모 배출원 감시 강화 등을 통한 오염원 집중 관리 실시

- 4 미세먼지 국외영향에 대한 대책 미흡
 - 한·중간 **연구협력^{*}을 추진** 중이나, 실질적 **오염도 개선**에는 **역부족*** '14.7월 이후 한·중 대기측정자료 공유, 공동연구단 구성 등을 추진 중
 - **환경장관회의 수준**에서 **미세먼지 문제**를 논의 중이며, 아직 **국가 차워의 제도화된 협력체계 부재**
 - ▶ 미세먼지 문제에 있어 인접국가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 필요
- 5 위해성을 고려한 민감계층 보호대책 부족
 - PM_{2.5} 환경기준 설정(´15)이 美, EU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늦었고 그 수준도 WHO 기준 대비 2배 높은 상황
 - ※ 환경기준(24h, μg/m³) : 한국 50, 미·일 35, WHO 25
 - 미세먼지 건강영향, 단기간 내 오염도 개선이 어려운 상황*에도 불구, 국가 차원의 적극적 대처 미흡
 - * 불리한 지리·기상여건(편서풍 지역,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정체 심화, 봄철 강수량 부족) 속에서 국외영향이 존재, 국내 배출량도 단기간 내 감축 곤란
 - ▶ 보호서비스 강화 등을 통한 민감계층 중점 보호 실시
- ⑥ 과학적 대응 역량 부족
 - 지난해부터 **2차 생성 미세먼지(PM₂₅) 배출량을 산정**하고 있으나, 배**출량-농도-위해성 간의 정량적인 메커니즘** 규명은 부족
 - ※ (LA사례) 경유차의 대기중 PM₂₅ 농도 기여도는 약 15%이나, **발암위해성 기여도는 약 84%**
 - 국외 영향, 국내 주요 **오염원별 기여도**(누락배출원 조사 등) 등에 대한 보다 **체계적, 과학적 연구**가 필요
 - ▶ 체계적인 조사·연구 확대로 과학적 기반의 대응역량 강화

\mathbf{IV}

종합대책의 방향 및 추진체계

1. 기본방향

- ① 오염도 높은 '우심지역' 중점관리
 - 수도권・대도시 중심 ⇒ 수도권 外 지역 관리로 전환
- ② 통합적인 저감 대책 추진
 - 2차 생성 고려한 **원인물질 관리 강화**, 에너지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
- ③ 국제협력을 통한 공동노력 강화
 - 한·중 양자협력, 다자간 협력을 통해 미세먼지 문제 공동 대응
- ④ 인체위해성 관리에 중점
 - 민감계층 활동공간 관리강화, 보호 서비스 강화 등 집중보호
- 5 과학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역량 제고
 - 인벤토리 정교화, 위성·항공기 등을 통한 입체적 미세먼지 분석 등

< 미세먼지 관리 패러다임 전환 >

구 분	종전 패러다임		신(新) 패러다임
① 관리지역	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		전국 우심지역 중심
② 관리방식	개별적 오염물질 관리		통합적 관리 추진
③ 국제협력	연구협력 단계		실질적 저감 으로 전환
④ 중심정책	일반 대기오염물질 중심	1	인체위해성 저감 중심
⑤ 대응기반	개별, 분산된 연구		체계적, 통합적 연구

□ 우심지역 중점관리, 통합적·과학적 관리, 인체 위해성 최우선 고려 등 미세먼지 정책의 '패러다임 전환'

2. 비전 및 추진체계

비전

맑고 깨끗한 공기, 미세먼지 걱정 없는 대한민국

목표

20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% 감축

* 나쁨 이상 일수(전국) : '16년 258일 → '22년 78일 PM_{2.5} 오염도(서울) : '16년 26μg/m³ → '22년 18μg/m³

추진 전략

- ◇ 대규모 배출원 집중 저감을 통한 감축목표 달성
- ◇ 주변국과의 환경협력 강화로 동북아 대기질 개선
- ◇ 민감계층 집중보호로 국민 건강피해 예방
- ◇ 과학적인 연구기반 강화로 미세먼지 대응역량 제고

분야

중점 추진과제

국내 배출

감축

1 발전부문

- ① 노후 석탄화력 폐지 등 석탄발전 비중 축소
- ② 발전용 에너지 세율체계 조정 검토
- ③ 친환경적 제8차 전력수급계획 수립
- ④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
- ② 산업부문
- ⑤ 총량관리 대상지역 확대 및 먼지총량제 실시
- ⑥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
- ③ **수송부문**
- ⑦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및 운행제한 확대
- ⑧ LPG차,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
- ⑨ 친환경차협력금 제도 시행
- ① 선박·건설기계 미세먼지 관리 강화
- ④ 생활부문
- ① 공사장·불법소각 등 관리 사각지대 집중 관리
- ① 도로청소차 보급 및 도시 숲 확대

국제 협력

- 5 한·중, 동아시아 미세먼지 협력
- **③ 한·중 정상회의를 통한 공동선언문 발표 추진**
- ④ 동아시아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 검토

민감 계층 보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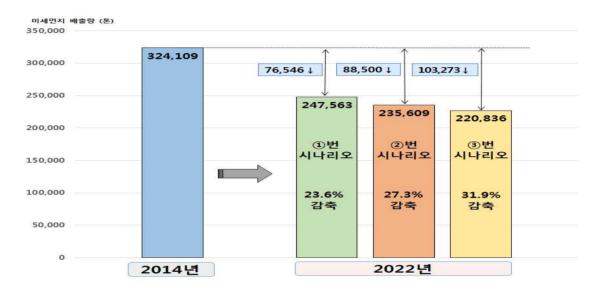
- ⑥ 민감계층 보호 인프라 및 서비스
- ⑤ 아이들을 위한 실내기준 마련
- ⑯ 어린이집, 학교 주변 미세먼지 측정망 우선 설치
- ① 학교 실내 체육시설 확대
- 18 민감계층 대상 찾아가는 케어서비스

정책 기반

- 7 과학적 관리 기반
- **⑩ 환경위성 등 활용한 측정 및 예·경보시스템 강화**
- ② 미세먼지 국가전략 프로젝트(R&D) 추진

미세먼지 30% 감축 목표

- □ (개요) 핵심 4대 부문(발전, 산업, 수송, 생활) 주요 감축대책의 강도 조절 등을 통해 '22년 미세먼지 배출 삭감량 산정(3가지)
 - ※ 지자체의 교통수요관리, 규제대책(충남의 화력발전 기준강화 등)은 식감량 신정에서 제외
- ☐ (결과) '14년 대비 최소 23.6%~최대 31.9% 수준까지 배출량 삭감 가능※ 30% 감축목표는 6.3 특별대책 목표('21년까지 14%)대비 약 2배 높은 수준



< 시나리오별 주요대책 >

부문	①번 시나리오	②번 시나리오	③번 시나리오
발전	노후 석탄화력 셧다운, 조기폐지운영 중인 석탄화력 관리강화	①번 시나리오 + - 공정률 낮은 석탄화력 원점 재검토 -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	②번 시나리오 + • '30년까지 20% 목표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
산업	▪ 공장시설 배출기준 강화 ▪ 수도권 총량관리 강화	①번 시나리오 + • 수도권外 총량관리 시행 • 먼지총량제 도입 • NOx 배출부과금 부과	②번 시나리오 + ■총량대상 사업장 대폭 확대 ■ 공장시설 배출기준 추가 강화
수송	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운행제한 확대 ■ LPG차 등 친환경차 확대 ■ 선박, 건설기계 관리	< 좌 동 >	②번 시나리오 +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확대('22년 88.3만대)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강화('22년 3.1만대)
생활	▪ 도로청소차량 보급 확대 ▪ 도료 VOCs 함유기준 강화	< 좌 동 >	< 좌 동 >

⇒ 임기내 30%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강력한 행동 요구

\mathbf{V}

중점 추진과제

1. 국내 배출량 30% 감축

◇ 목표 : '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% 저감

◇ 대책 : 4대 핵심 배출원(발전, 산업, 수송, 생활) 집중 감축

< 부문별 감축률 및 주요대책(31.9% 감축 기준) >

부문	′14년 비 (톤, 기준	배출량 음연도)	′19년 비 (톤, △1		´22년 비 (톤, △3		감축량 (톤)	부문	축률 31.9% 기준 감축비중
합계	324,109	(100%)	283,400	(100%)	220,836	(100%)	△103,273	31	.9%
발전	49,350	(15%)	42,973	(15%)	36,839	(17%)	△12,511	25%	3.9%
산업	123,284	(38%)	104,652	(37%)	70,493	(32%)	△52,791	43%	16.3%
수송	90,361	(28%)	79,982	(28%)	61,377	(28%)	△28,984	32%	9.0%
생 활	61,114	(19%)	55,793	(20%)	52,127	(23%)	△8,987	15%	2.8%

※ 부문별 감축목표는 이행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수립 및 점검과정에서 수정·보완 예정

1 발전부문

- 석탄火電 비중 축소(공정율 낮은 석탄발전 원점 재검토, 노후 석탄 기동중단 및 조기 폐지 등
- 재생에너지 확대(′30년 20%)
- 발전용 에너지(유연탄, LNG 등) 세율체계 조정 검토

2 산업부문

- 총량제 대상 지역(수도권→충청·동남·광양만권) 및 대상 물질(먼지) 확대
- 배출기준 강화 및 NOx 부과금 부과
- 사업장 감시 확대(TMS 부착, 수시점검 등) 및 중소사업장 지원(개선자금 융자 등)

③ 수송부문

- 노후경유차 점진적 퇴출 추진(조기폐차 물량 확대, 운행제한 확대 등)
- LPG차, 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
- 선박(연료 황 함량기준 강화 등) 및 건설기계(3.1만대 저공해화 등) 관리 강화

4 생활부문

- 도로청소차량 보급 2배 확대(~16년 1,008대 → ~22년 2,100여대)
-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(지도·점검, 제도개선 등)
- 농촌 불법소각 차단 지원책 강화(농업잔재물 파쇄 지원 등)

1-1. 발전부문

- ◆ (배출현황) 전국 배출량의 15%(49,350톤), 충남지역에 火電 집중(30기/전체 61기)※ 석탄발전의 발전비중은 39%로, OECD 평균 30%보다 높음(15년 기준)
- ◆ (목표) '22년까지 발전부문 배출량의 25% 삭감(△12,511톤, 전체 △3.9%)
- ◈ (핵심대책)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 재검토 등 석탄발전 비중 축소, 재생에너지 확대 등 친환경 에너지원 확대

단기대책(~'18년 상반기)

- □ 공정률 낮은 석탄화력의 재검토 및 신규 금지
 - 공정률 낮은 **석탄발전**(9기*) **건설 원점 재검토**(배출량, 진척도, 입지 등 고려)
 * LNG 등 전환 추진 협의 4기(당진2, 삼척2), 최고수준 환경관리 5기(신서천1, 고성2, 강릉2)
 - 신규 석탄발전소 원칙적 금지를 제8차 전력수급계획(17)에 반영
- □ 운영 중인 석탄화력 관리 강화
 - **노후 석탄화력발전소** 봄철(3~6월) **일시 가동 중단**(17년은 6월 중단)
 - **석탄화력 39기**에 대해 방지시설 개선 가능성, 최적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배출허용기준을 현행 대비 약 2배 강화(′18.上)
 - 운영 중 석탄화력의 **대대적 성능개선** 및 **환경설비 전면 교체** (~22년까지 7.2조 투입)
- □ 고형연료제품(SRF) 사용시설 관리 강화
 - O SRF 열병합발전시설 대상 배출 농도, 운전조건 등에 대한 실시간 분석감시, 정기 정밀진단(연 1회) 및 허가 재검토(매 5년) 실시
- □ 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차세대 기술개발 강화
 - 기후변화 대응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**차세대 상용화 기술 중심**으로 **R&D**를 추진, 수요 발굴부터 실증까지 **기후산업 모델^{*} 지원**('17~)
 - * 도심형 태양광 발전, 건물용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, 전력 IT 기술 등

중장기대책('18년 하반기~'22년)

- □ 노후 석탄발전 임기 내 폐지
 -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발전소(7기*)의 당초 폐지 일정을 앞당겨 (1~3년) 임기 내 폐지
 - * (~17.7월) 3기 기폐지, (~19.1월) 1기, (~19.12월) 2기, (~21.1월) 2기, (~22.5월) 2기
- □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한 에너지 계획으로 전환
 - (前) **발전단가** 우선 고려 ⇒ (後) **환경, 안전**도 종합 고려
 - 깨끗하고 안전한 미래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**제8차 전력수급** 기본계획(′17),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(′18) 수립
 - 친환경·분산형 에너지 믹스 달성을 위해 석탄 화력 비중 축소,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* 등이 주요내용으로 포함
 - * 재생에너지 비중 : ´15년 6.4% → ´30년 20%
- □ 발전용 에너지원 친환경적 세율체계 조정 검토
 - 발전 연료별(유연탄, LNG 등)로 미세먼지 등 사회적 비용 반영을 위해 관계부처 **합동 TF 구성**('17), '18년 공동연구를 통해 조정방안 도출 ※ 개별소비세(현재): 석탄(유연탄) 30원/kg, LNG 60원/kg
- □ 도서지역 발전소, SRF 시설 등 관리 사각지대 관리 강화
 - 액체연료(B-C 油) 사용 발전시설 배출기준 **강화**, 도서지역 발전소 (58개소)를 배출시설에 추가·관리 검토(′18.下)
 - 고체연료 사용제한 범위에 고형연료제품을 포함하여 입지 제한하고, 주거지역 인근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배출기준 강화(´18)
 - ※ 고체연료 사용제한지역 확대방안 검토

1-2. 산업부문

- ◆ (배출현황) 전국 배출량의 38%(123,284톤), 관리 부실 및 사각지대 발생※ 전국 사업장수(총 57,500개소, ´16.12월) : 1∼3종 5,496개소, 4·5종 52,004개소
- ◆ (목표) '22년까지 산업부문 배출량의 43% 삭감(△52,791톤, 전체 △16.3%)
- ◆ (핵심대책) **총량제 확대, 감시 강화** 등으로 집중 감축 및 관리 내실화
 - * 중·대형사업장(1~3종) 중 굴뚝자동측정기기(TMS) 부착 굴뚝은 3.3%

단기대책(~'18년 상반기)

- □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제(Cap & Trade) 내실화
 - **먼지총량제**의 **단계적 확대**(~17년 시범실시, ~18년 수도권 공통연소시설부터 적용)
 - **총량제** 적용사업장(1~3종) **굴뚝자동측정기기**(TMS) **부착 의무화**(´18.上)
- □ 불법 행위에 대한 전방위적인 점검·감시 실시
 - 고농도 발생 시즌(봄, 겨울)에 다량 배출업소 집중점검
 - 환경감시관 확충, 휴대용 단속장비 도입(´17.下)* 등 **감시역량도 강화**
 - * 현행 단속장비는 측정준비에 최소 1시간30분 이상 소요되어 준비시간 동안 사업장이 단속을 대비하는 경우 발생
 - 석유화학산업체, 도료 제조업체 등 **VOCs 배출원 점검^{*} 실시**(매년 5~7월)
 - * 비산배출 시설관리기준 및 도료 중 VOCs 함유기준 준수 여부 등 점검
 - TMS 부착 제외 사업장 대상 사물인터넷(loT), 드론 등 최신기술을 동원한 실시간 감시, 관리 방안 마련(´17.下)

- □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관리체계 개선
 - 산업배출시설의 환경관리실태를 검토한 후 **최적환경관리기법을 적용, 재허가**('17~'22, 19개 업종·1,300여개소)
 - 최적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, **다량배출 사업장**(제철·제강, 석유정제, 시멘트 등)의 배출허용기준 **강화**(´18.上)
- □ 중소사업장 대상 환경개선 지원 대책 추진
 - **'환경컨설팅*'**을 통해 4·5종 소규모 사업장 대상 **기술지원** 실시 * 관련 분야 전문가가 방지시설 운영 요령, 관련 법령 등을 설명
 - 중소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시 '환경개선자금 융자'(환경산업기술원)를 통해 설치비용 저리 융자 지원(최대 50억원 3년 거치, 4년 균분 상환)

중장기대책('18년 하반기~'22년)

- □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총량제 대상지역 확대
 - 수도권 外 미세먼지 **배출원 밀집지역을 '대기관리권역'으로 지정** (´19.上, 충청·동남·광양만권), **사업장 배출총량제** 도입
- □ 질소산화물에 대한 대기배출부과금 부과
 - **미세먼지·오존** 생성 원인물질인 **질소산화물**(現 먼지·SOx 등 9종 대상)에 **대기배출부과금 부과**(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·시행규칙」개정, ´18.下)
- □ VOCs 비산배출 사업장 시설관리기준 강화
 - 석유제품 등 저장시설에 대한 VOCs 누출 확인 규정 도입, 비산 누출시설의 누출기준농도 강화
 - ※ (현행) 2,000ppm → (´18~´19년 시행) 1,000ppm → 이후 단계별 강화 계획 마련

1-3. 도로 수송부문

- ★ (배출현황) 전국 배출량의 12%(39,005톤), 대도시 미세먼지 기여도 1위 경유차
 ※ (LA사례) 경유차의 대기중 PM₂5 농도 기여도는 약 15%이나, 발암위해성 기여도는 약 84%
 ※ 수도권 경유차 배출량 비중: 23%(1위), 화물차 배출비중: 자동차 부문의 60%(등록비율 15%)
- ◆ (목표) '22년까지 도로 수송부문 배출량의 43% 삭감(△16,624톤, 전체 △5.1%)
- ◈ (핵심대책) 노후경유차의 저공해화 확대(22년까지 221만대 저공해화 완료)와 함께, 전기차·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

단기대책(~'18년 상반기)

- ① 경유차 미세먼지 배출 저감
- □ 노후 경유차('05년 이전)* 저공해화 확대
 - 조기폐차 지원물량 대폭 확대(~17년 8만 → ~18년 이후 연평균 16만대)
 - 노후화물차 조기폐차 활성화를 위한 **보조금 지급대상 개선** 검토 등 **인센티브 추진**
 - 노후 화물차 대상 저공해화 집중 추진
 - **항만 · 공항** 입·출입 빈도가 높은 **대형 노후경유차**(15톤 이상) 대상 우선 **저공해조치명령**(미이행시 운행제한) 및 비용 지원(지자체 협조)
 - * 전체 경유차(927만대)의 31%(286만대)인 노후차가 경유차 배출량의 57% 차지

- □ 운행차 및 신규 경유차 배출가스 관리 강화
 - **운행 경유차 매연 배출허용기준** 대폭 **강화**(´18년, 정밀검사 15%→8%, 정기검사 20%→10%)
 - 신규 경유차(3.5톤 미만) 실내 인증시험 외에 도로 주행조건에서 NOx 배출기준 신설*(′17.9월)
 - * 대형경유차(3.5톤 이상) 실도로 인증기준은 '16.1월부터 시행 중
 - 신차 판매 전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비(PEMS*)를 이용하여 기준 충족여부 확인
 - * PEMS : 실제 도로에서 다양한 운행조건(급가속, 언덕주행, 에어콘 가동 등)의 배출가스 발생을 측정, 적합여부 판정

②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

- □ LPG 차량 및 CNG·전기 버스 보급 확대
 - LPG 차량에 대한 사용제한 완화
 - (현행) 승용(경형, 7인승 이상)·승합·화물차 → (개선) RV차량 등으로 단계적 확대 추진(「액화석유가스법」개정 추진 중)
 - ※ LPG차 NOx 배출량(실도로) : 휘발유차 대비 3배 ↓, 경유차 대비 93배 ↓ 배출
 - CNG 버스 확대로 대중교통수단의 친환경성 제고
 - 대도시 노선버스의 CNG 버스化*(계속), 전기버스 확대('18~)
 - * 전국 버스(44,784대) 중 약 60%(26,669대)가 CNG 버스(16년말 기준)
 - 서울 진입 시내(광역)·마을 버스 등을 대상으로 CNG 버스(전기, 수소 포함)에 한해 노선 신설 및 증차 허용(서울·경기·인천시와 협의 추진)

- □ 의무구매 확대 등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지원
 - 공공기관 친환경차 **의무구매비율 상향**(´17, 現 50→70%)
 - ※ 의무구매비율 미준수 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제고방안 검토
 - 공동주택 내 이동형 충전기 사용여건 개선을 위해 기존주택은 차량인식 전자태그 설치 간소화*, 신축주택에 콘센트 설치 의무화**
 - * 기존 콘센트 주변에 이동형 충전기 사용을 위한 차량 인식장치 부착 절차를 관리주체 동의만으로 가능토록 개선('17.1월 시행, 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」)
 - ** 500세대 이상 주택 대상, 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」개정('17.12월)

③ 교통 수요관리 강화

- □ 교통혼잡 지역 대상, '녹색교통특별대책 지역' 지정 활성화
 - 서울시의 특별대책지역 종합대책(´17.3월, 한양도성 내부 지정)이 차질 없이 준비·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
 - ※ 지역 지정시 BRT, 트램 등 대중교통수단 활성화 등 종합대책 수립·시행
 - 서울시의 추진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재정지원·요건완화 등 녹색교통특별대책지역 지정 활성화 방안을 강구(´18)
- □ 승용차 운행제한을 위한 '대중교통전용지구' 확대
 - 현재 운영 중인 **대구 중앙로, 서울 연세로** 등에 대한 효과분석·홍보 ※ 대구 중앙로(´08~´09, 국비 30억원), 서울 연세로(´12~´14, 국비 13.5억원)
 - 지자체 설명회, 예산 반영 등과 연계하여 **사업 확대 추진** (´18년 수원 아주로, 원도심)

중장기대책('18년 하반기~'22년)

- □ 경유차 비중 축소 및 친환경차 대중화
 - 노후경유차 **운행제한 지역 확대**('17년 수도권 → '20년 충청·동남·광양만권)
 - ´22년까지 전기·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
 -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민·관 상설협의체 구성('18)
 - 온실가스 대상 '저탄소차협력금제도'('20년까지 시행 유예)를 대기오염 물질까지 포괄하는 '친환경차 협력금제도'로 확대·개편
 - 친환경차 보급실적, 배출가스 등급제 등을 감안하여 시행방안· 시기 확정(~´19, 관계부처 공동 제도 설계)

구 분		현재	2020년(6.3대책)	2022년(종합대책)
	합 계	총 25만대	총 150만대	총 200만대
친환경차	전기차	1.2만대	25만대	35만대
(누적)	수소차	0.01만대	1만대	1.5만대
	하이브리드차	23.8만대	124만대	163.5만대
r	합 계	총 764기	총 3,100기	총 10,310기
충전 인프라	전기(급속)	7507	3,00071	10,0007
(누적)	수소	14개소	100개소	310개소

※ 재정(보조금 지원), 비재정 수단(친환경차 협력금제도 등) 병행

☐ 전기·수소차 충전소 설치 확대

○ **'22년까지 대형마트**(500여개소), 주유소(12,000여개소) 등에 급속 **충전기 1만기** 설치(민간 포함)

- **'22년까지 160개소의 복합휴게충전소**(전기·수소·CNG 등 복합충전소) **구축**('18~, 국토부·환경부 협업)
 - ※ 고속도로, 국도, 도시도로 등에 휴게소와 충전소를 통합한 패키지 민자사업 추진

□ '22년까지 전기이륜차 5만대 보급

- 운행노선이 일정한 우체국, 자치단체 사업소 등과 **MOU를 체결**하여 우선 보급하고, **전기이류차 의무구매*** 도입 검토
 - *「친환경자동차법」. 「수도권대기법」개정을 통한 의무구매 규정 마련
- 공공기관, 프랜차이즈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수요자 맞춤형 전기 이류차 기술개발 지원 및 실증사업 추진
- 기존 전기차 충전기*를 활용한 충전 인프라 구축 병행
 - * 전기차 충전기에 220v 충전을 위한 콘센트 추가설치, RFID 태그 활용 등
- □ 경유차·이륜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강화(´21년 첫 검사 실시)
 - 운행경유차* **배출가스 검사항목에 질소산화물 추가**('21년 수도권 우선 실시 후 수도권 外로 확대)
 - * 대상 : '18년 이후 제작된 중소형 경유차
 -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을 기존 대형(260cc 초과)에서 중·소형까지 확대(50cc 이상~260cc 이하의 '18년 이후 제작 이륜차)
- □ 배출가스 검사기관 일원화 및 임의 조작 근절('18~)
 - 임의조작·부정검사 방지를 위해 **대형버스**에 대해 단계적으로 **검사기관 일원화**(교통안전공단·지정정비사업자→교통안전공단)
 - 배출가스 관련부품 **임의설정** 또는 저감장치 **파손시 처벌 근거조항 마련**(´18, 「대기환경보전법」개정)

1-4. 비도로 수송부문(Off-road)

- ◈ (배출현황) 전국 배출량의 16%(51,355톤), 높은 배출량 대비 관리 미흡
 ※ 비도로 수송부문 세부 기여도(PM₂5, ´14년) : 선박(62%) > 건설기계(29%) > 농기계등(9%)
- ◆ (목표) '22년까지 비도로 수송 배출량의 24% 삭감(△12,360톤, 전국 △3.8%)
- ◆ (핵심대책) 선박배출 저감, 건설기계 저공해화^{*} 확대 등으로 사각지대 관리 강화
 - * '16년 건설기계 저공해화 물량은 노후 건설기계의 0.6% 수준

단기대책(~'18년 상반기)

- □ 선박·항만에 대한 획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
 - 주요 **항구도시*** 중심으로 **선박 및 항만** 미세먼지 **종합대책**을 수립('17.下)하고, 항만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('17~)
 - * 항구도시 선박 배출기여도(PM₅ '14년): 부산 28%, 전남 21%, 울산 13%, 경기 9%
 - 항만 내 **이동식 하역장비**(야드트랙터, 총 581대)의 **친환경 연료 전환**(경유→LNG) 실시(~´22)
 - 선박용 미세먼지 **저감장치 개발 및 상용화***('17~), **LNG** 선박의 **충전 인프라**(벙커링) **기술개발****('18~)
 - * '19년까지 실증 추진, 이후 시범장착 등 상용화 실시
 - ** 선박 배출가스 규제(IMO)에 대응, 국제적으로 LNG 추진선 운영 인프라 도입 추세

< 선박 등록 및 관리현황 >

- ▶ (선박 배출) 비도로이동오염원의 49%(NOx), 98%(SOx) 차지('14년 기준)
- ▶ (배출허용기준) 국제해사기구(IMO)의 해양오염방지협약(MAPPOL), 「해양환경관리법」, 「대기 환경보전법」에 따라 NOx 배출기준(130kM급 초과 디젤기관) 및 연료 황 함량 기준(3.5%) 운용

중장기대책('18년 하반기~'22년)

□ 건설기계, 경유철도 저공해화 지원 및 제도 개선

- '22년까지 노후건설기계* 3.1만대(전체 노후기계의 20%) 대상 엔진 교체, 배기가스 후처리장치(DPF) 부착 등 저공해조치 실시
 - * 지게차, 굴삭기, 도로용 3종(덤프, 콘크리트 믹서, 콘크리트 펌프) 등 15.7만대
- 비산먼지 신고대상 건설사업장(1,000㎡ 이상)에 대해 **신형 건설기계** 또는 **저공해 건설기계**만 사용*토록 제도개선(~´18,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개정)
 - * 노후건설기계(도로용 3종)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(예산지원 병행) 미이행시 사용제한
- 미세먼지 사각지대인 **경유철도차량***에 대해 **배출허용기준 신설** (´17년「대기환경보전법」상 근거조항 마련 후, ´18년 배출허용기준 신설)
 - * 현재 총 380량의 경유기관차·동차 운영 중(전시 대비 필수보유량 포함)

□ 선박 및 항만 배출관리 강화

- 선박의 연료 황 함량 기준을 현행 3.5% → 0.5%로 강화
 (´18년「해양환경관리법」개정, ´20년 시행)
- LNG 선박 충전 인프라 구축(총 3개소: 통영, 부산, 울산) 추진(´19~´25, 민자)

 * 일반 선박 대비 미세먼지·황산화물 90% 이상 감축 효과
- 정박 중인 선박의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한 육상전력공급시설 (AMP*) 구축 및 운영(신규 건설 부두 대상)
 - * 기존 벙커유 발전기 대신 육상전력을 공급하여 정박시 대기오염 배출 제로화

1-5. 생활부문

- ◆ (배출현황) 전국 배출량의 19%(61,114톤), 비산먼지・생활 VOCs 관리 시급※ 생활부문 기여율: 도로재비산먼지(39%) > 농업잔재물 소각(16%) > 건설공사장(7%) 順
- ◆ (목표) '22년까지 생활부문 배출량의 15% 삭감(△8,987톤, 전국 △2.8%)
- ◈ (핵심대책) 도로청소차 보급 확대, 도료 중 VOCs 함유기준 강화 등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강화

단기대책(~'18년 상반기)

- □ 도로 및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
 - 도로설계기준 변경*(´17,「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(설계 및 시공기준)」)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 사전 차단
 - * 화단 등으로부터 토사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오목형 화단 설치
 -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저감
 - 비산먼지 **신고대상 확대**(농지정리, 리모델링 등) 및 비산먼지 저감 효과 증대를 위한 **정량적 기준**(방진망 개구율 등) 도입(´18)
 - 고농도 미세먼지 시즌에 아파트 등 대규모 공사장 대상, 집중 점검 실시(방진막, 살수시설 적정 설치·운영 등)
- □ 미세먼지 저감 및 조기분산을 위한 '도시 숲' 조성・관리
 - 도시-도시외곽을 연결하여 미세먼지를 조기 분산·저감시키는 '도시 숲' 조성 추진(산림청, '17년 20억원)
 - 도심 내 **'녹지 1평 늘리기**(100개소)**'** 사업 추진(광주광역시, '17~'18)

중장기대책('18년 하반기~'22년)

- □ 도로 재비산 먼지 집중 관리
 - 저마모타이어 기준* 마련('22)으로 도로 재비산먼지 발생원 저감
 - * R&D를 통해 저마모 타이어 개발 중(1단계 완료, 現 2단계 ´16.8월~´21.4월)
 - 도로먼지 청소차를 현재 대비 2배 보급·확대(´16년 1,008대→´22년 2,100여대)
- □ 도료 중 VOCs 함유기준 강화 및 관리대상 확대('18)
 - 건축용, 공업용 도료 등의 VOCs 함유기준 강화 ※ 관련 연구용역 및 포럼 추진 중(´16.12~´17.9월)
 - VOCs 함유량을 제한하는 도료(현행 건축용, 공업용 등 4종)에 목공용 도료 등을 추가
- □ 주유소 유증기(VOCs) 관리 강화
 - 인구 **50만 이상 10개 도시***(대전, 울산 등) 대상 연간 휘발유 판매량**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단계적 확대
 - * 기존 특별대책지역, 대기환경규제지역에 포함된 서울, 인천 등 24개 도시는 모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旣 의무화(´98~)
 - ** (´19.1월) 판매량 2천m³ 이상 → (´19.12월) 1천m³ 이상→ (´20.12월) 3백m³ 이상
- □ 적극적 지원을 통한 불법소각 차단
 - 쓰레기 분리·보관용 '재활용 동네마당' 설치 확대('17년 447 → '21년 1,080개소)
 및 농촌지역 공동집하장 확충('21년까지 매년 1,000여개)
 - 대부분 불법소각 처리되는 **농업 잔재물**의 적정 처리를 위해 **파쇄·살포 지원** 사업 추진(농식품부, 1~2월·10~11월)

2. 국제협력 강화

- ◆ (목표) 협력채널 구축, 연구협력 ⇒ 실질적 저감으로 전환
- ◆ (핵심대책) 공동연구.기술지원을 토대로 한·중 정상회담 논의 등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조 강화

① 한・중 양자협력 및 공동대응 강화

- □ **한·중 정상회의 의제**로 미세먼지 문제 **논의**(종전 장관회의 의제)
 - 한·중 정상회담 계기로 미세먼지 협력방안 직접적 논의
 - 한·중 양국간 미세먼지 협력의지 공동선언 추진('18~'19)
- □ 양국가 공고한 환경협력체계 구축
 - 중국 지역 대상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 협력사업 강화
 - 국내 영향이 큰 중국 지역(화북지역·산동성 등) 대기질 **공동조사·** 연구*「청천(晴天) 프로젝트」추진(~17.5월~~20)
 - * 한·중 대기질 공동연구단(´15.6월~, 베이징 내 구성) 주관
 - 실질적 오염 저감을 위해 한·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(방지시설) 실증사업 확대*(~´21)
 - * (대상지역) 산동·하북·산서·섬서·요녕성·내몽고 → 강소·하남·길림·흑룡강성 추가 (대상기술) 제철소, 석탄화력·소각발전소 등의 탈황·탈질·집진
 - 한·중 대기질 측정자료 공유 지역 확대*(´18)로 정보공유 강화
 - * (현행) 韓 3개, 中 35개 도시 → (개선) 韓 17개, 中 74개 도시
 - 한·중 협력사업 기반 강화로 일관성·지속성 제고
 - 향후 화경협력 방향을 제시하는 「한·중 환경협력계획」수립('18)
 - 공동연구, 기술 교류 등을 총괄하는 「한·중 환경협력센터」설치(베이징) ※ 한·중 공동연구단, 한·중 공동 환경기술실증지원센터 등 기존 사무소 통합

② 동아시아 차워의 국제적 노력 강화

- □ 동아시아 국제협약 체결 적극 검토
 - 한·중·일 채널, 동아시아 **다자 채널 등 활성화**
 - NEACAP(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) 출범 추진으로 **동북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기반 마련**
 - 동북아 장거리이동 대기오염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**국제 공동** 연구 기구 설치 추진('21~)
 - 동북아 지자체 간 대기질 정책 교류 채널 활성화, 국가-지자체 연계협력 플랫폼 구축도 병행
 - ※ (협력 사례) 베세토(Bejing-Seoul-Tokyo) 협력('95~'99), 중국-일본의 도시간 연계협력 사업('13~)
 - 장기적으로 유럽(CLRTAP), 미국-캐나다의 대기질 협약모델을 바탕으로 한·중·일 미세먼지 협약 체결 적극 검토(21)
 - ※ 한·중·일 협약을 기본으로 하되 몽골, 북한 등 동북아 타국가 참여 가능

< 대기질 관련 해외 협약 모델 >

- ◇ 유럽 장거리 월경성 대기오염에 관한 협약(CLRTAP, '79년 채택)
 - (개요) 유럽 내 장거리이동 영향 저감을 위해 정보교류·공동연구 등 국제공조
 - (**시사점**) '72년 기술협력을 시작으로 '79년 협약체결까지 단계적 접근
- ◇ 미국-캐나다 대기질 협약(U.S.-Canada Air Quality Agreement, '91년 채택)
 - **(개요)** 양국 대기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응책 마련
 - (시사점) 상대국에 심각한 대기오염을 야기할 수 있는 활동 등에 관해
 - ① 환경영향평가, ② 사전통지, ③ 저감협의·정보제공 등 구체적 의무 규정

3. 미세먼지 민감계층 중점 보호

- ◆ (목표) 소극적, 사후적 대응대책 ⇒ 적극적, 선제적 알림·보호대책 시행
 - ※ 체중 1kg 당 호흡량 어린이가 성인의 3배(성인 200리터, 1세 미만 어린이 600리터)
 - ※ 국제암연구소(IAPC): 미세먼지를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1군(Group 1) 발암물질로 분류(13.10월)
- ◈ (핵심대책) 기준강화, 측정망 확충으로 민감계층 보호기반 강화, 실내체육 시설 설치 등으로 활동공간 특별관리

① 민감계층 중점보호 기반 강화

- □ 환경기준 및 민감계층 보호기준 강화
 - 미세먼지 **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**으로 강화, **경보기준도 단계적 강화**

구분	현 행 (´16)	강화안(18)
PM _{2.5} 환경기준(24시간)	50	35 (미국, 일본 수준)
PM _{2.5} 주의보 기준	90	70~80 (잠정)

- 민감계층 이용시설의 실내 미세먼지(PM₂₅) 유지기준 신설*
 - * 어린이집 PM_{2.5} 기준 : '18년(권고기준) → '20년(유지기준) 학교 PM_{2.5} 기준 : '18.3월부터 유지기준 시행

□ 어린이집, 학교 주변 등에 대한 공기질 측정 확대

- 학교 인근을 중심으로 도시대기측정망* 대대적 확충, 발전소 주변
 미세먼지 측정소 확대(現 35개소 → '19년 70개소)
 - * ´16년 264개소 → ´22년 505개소(지자체 협조 필요)
- **간이측정기***, **이동측정차량** 등 학교 주변에 측정설비를 추가 배치해 정밀한 **학교별 일일공지 시스템 구축**(자료동화시스템 활용)
 - * 시범사업을 통해 최적 설치방안 마련, 학교 일일공지시스템 정확도 향상에 반영

② 민감계층 이용·활동공가 특별관리

- □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민감계층 이용시설 공기질 관리
 - 체육관이 없는 초·중·고교(8.4%, 979개교/11,700여개교) **실내체육시설 설치지원**(~′19. 지방교육재정교부금)
 - 학교, 어린이집, 노인요양시설 등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등 지원

구분	주요 추진사항
교육부	▶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원 (´17년 시범사업 추진) ※ ´17년 효율성 평가 등을 거쳐 설치 확대여부 검토
지자체	▶ 어린이집, 아동복지시설, 경로당 등 취약시설 대상 공기 청정기 보급 (서울, 충남 등 5개 지자체) ※ 서울: 어린이집 등 13,413개소(17~20), 충남: 발전소 인근 44개 학교(17)

□ 민감계층 활동공간 특별관리 실시

- 미세먼지 우심지역 중 민감계층 이용시설 집중지역을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("미세먼지 프리존")으로 지정('19)
 - 동 지역에 노후 경유자동차 및 어린이 통학용 경유차량 출입제한, 친환경차 우선 출입,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조업단축 조치
 - ※「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지정 근거 반영
- 민감계층 활동공간(어린이집 등) 안심인증제 도입('18년 시범사업 → '19년~ 인증 시행)
- **어린이 통학차량**(경유차)의 **친환경차**(LPG·CNG차 등) **전환**(~ '22)
 - '09년 이전 노후 소형 경유차 10%(2,600대)를 LPG차로 시범 전환 지원, '10년 이후 경유차는 단계적 전환 유도
 - ※ 통학차량(경유차 7.8만대) 中 소형(15인 이하) 5.2만대, ´09년 이전 노후 소형 2.6만대

③ 민감계층의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

□ 고농도시 민감계층 대상 보호서비스 강화

- 독거노인 등 민감계층 대상 '찾아가는 케어 서비스' 실시
 - 미세먼지 원인질환 감시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('18년 시범 실시)
 - 의료진(시설 종사자)·교사를 위한 진료·돌봄 가이드라인 개발과 예방지도 및 전문물품* 개발(´19년 시범사업)
 - * 질환별 주의·예방 지도 가이드라인, 기저질환별 예방물품 등
- **영유아, 어린이** 등 민감계층 대상 **마스크 지원**(서울·대구·경북 등 지자체. '17~)
- 취약계층 **대응 실무매뉴얼** 제작·배포('18)와 **현장이행 능력 제고** (일선기관 적용상황 점검(연 2회), 담당자 순회 교육(연 1회))

□ 고농도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강화

- **고농도 발생시** 수도권 지역에 3가지 유형(수도권 전체, 수도권 공공, 서울권역) 비상저감조치(차량부제, 사업장 운영 조정) 시행
 - 경제단체 참여 캠페인 및 시민단체 협력강화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 추진

구 분	수도권 전체발령	수도권 공공 발령	서울권역 발령
시행지역	수도권(경기	3개 군 제외)	서울시내
발령기준	①주의보(2시 <u>간 90μg/m³)</u> ②오늘 50μg/m³ ③내일 100μg/m³(3시 <u>간)</u>	<없 ①오늘 ②내일	50μg/m³
조치내용	△ 공공기관 차량2부제(민간 자율 참여), 서울시 공공 주차장 폐쇄 △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·공사장 운영 단축·저감 조치 △ 조치 시행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(서울시 참여확정, 경기·인천 미확정) △ 발령요건 해당시 즉시발령(비상저감협의회 회의 생략)		

- ※ 휴일(주말, 공휴일)은 차량 2부제 미시행
- 현행 수도권 공공부문 중심에서 민간 부문 및 수도권 外 지역 으로 확대·시행(19, 법률 제·개정 추진)
- 도로물청소차 운영 확대(일 1→2회), 불법소각 집중단속 등 조치강화 ※ 현행 차량2부제, 사업장·공사장 운영 단축·조정

□ 선제적 대국민 홍보·교육 실시

- **매년 9월**을 미세먼지 집중 홍보기간(2주)으로 설정, 선제적 홍보 실시
 - 난방 가동시즌(10월)에 앞서, 미세먼지 위해성, 고농도시 대응요령, 저감 실천(대중교통 이용 등) 등 집중 홍보
 - 미세먼지 관련 Q&A 안내(동영상 제작·전광판 광고), 온라인 캠페인, SNS 등 국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 집중 활용







- 시민·환경단체와 함께 국민 참여형 행사*도 실시
 - * '미세먼지바로알기 방문교실'운영(연중), '미세먼지 체험·홍보관(가칭)'운영(~17.11월)
- 학교 미세먼지 교육 강화 및 인식 제고
 - 교원 자격연수 및 안전관련 연수*시 미세먼지 관련 내용 교육(´18~)
 - * 교장 자격연수(교육부), 교감·1급 정교사 등 연수(교육청)
 - 시·도 교육청별 학교 미세먼지 담당자 교육 추진(매년 2~3월)
- 유아·초·중학생 대상 '맞춤형 환경교육프로그램' 운영

구분	주요 추진사항
유아	▶ 누리과정 연계 유아환경교육관 (2개 권역 3개소, 년 2만명) 운영
초・중등	▶ 푸름이 이동환경교실*(7개 권역 8대, 년 8만명), 자유학기제 연계 환경체험프로그램(년 5만명) 운영 * 대형 트럭 및 버스를 개조, 교육기자재를 탑재

4. 정책기반 강화

- ◆ (목표) 개별적, 단편적 접근 ⇒ 체계적, 종합적 연구로 전환
- ◆ (핵심대책) 국가 R&D, 위성관측 등 과학기술 기반 대응역량 제고 外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세먼지 대응기반 강화

① 과학기반의 미세먼지 대응역량 강화

- □ 미세먼지 생성메커니즘 연구 등 과학적 연구 강화
 - **미세먼지 대응 역량** 강화를 위한 **국가 R&D 추진**('17~'23)
 - '17년에 '국가전략프로젝트' 사업 착수, '19년까지 **496억원** 투자
 - 발생·유입, 측정·예보, 집진·저감, 보호·대응 분야 4대 분야 연구개발^{*} 추진 * (1단계, ´17~´19) 현안대응 → (2단계, ´20~´21) 현장 적용실증 → (3단계, ´22~´23) 사업화
 - 환경위성 등을 활용한 과학적인 분석 강화
 - 환경위성(~20년 발사)을 활용한 미세먼지 3차원 입체 관측 실시(~21)
 - 미국 NASA와 국내 대기질 공동 관측 주기적 실시(1차 '16.5월, 2차 '21년)
 - 미세먼지 발생원인 분석을 위해 '한국형 대기질 영향 예측 시스템(K-MEMS)*' 개발('17~'22)
 - * K-MEMS(Korea Monitoring-Emission Model System) : 대기 중에 배출된 오염물질의 화학반응·이동·확산에 따른 대기질 영향 예측 도구
- □ 인공지능(AI) 기반의 대기질 예·경보 시스템 구축
 - 빅데이터 및 수치예보 결과와 머신 러닝(Machine Learning) 기술을 접목한 인공지능* 예측시스템 구축
 - * 인공지능 : 과거자료를 학습하여 컴퓨터 추론 알고리즘을 통해 스스로 의사결정
 - **단기**(2일) 예측 시스템 개발, 시범예보 등을 거쳐 **21년까지 중기** (약 7일) 예측 시스템 구축(79.5억원 투자)

- □ 미세먼지 국가 배출량 정보의 체계적인 생산·관리
 - 현재 배출량조사(CAPSS) 체계 보완을 위해 **누락 배출원 발굴** (생물성 연소 등), 국내 실정에 맞는 **배출계수* 개발** 확대
 - 연구협의체 구성·운영으로 배출계수 검증체계 강화
 - * 현재 총 2만여개의 배출계수 중 국내개발 배출계수 비중은 24% 불과
 - 중장기적으로 '미세먼지 종합정보센터'를 설치(´19), 국가 배출량 정보를 체계적으로 생산·관리
 - ※「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설치 근거 규정 반영

② 미세먼지 특별 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

- □ 미세먼지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(2개) 제정 추진
 - 미세먼지 종합대책 이행 및 취약계층 보호·지원을 위한 「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가칭) 제정 추진(´17.下~´18)
 - 미세먼지청정관리구역 지정(노후경유차 운행제한, 사업장 조업단축 등) 및 고농도시 긴급조치 시행
 - 미세먼지 건강피해 조사 및 민감계층 보호(활동공간 안심인증제 등)
 - 수도권 중심의 **총량관리를 전국으로 확대^{*}하기 위한 「수도권 등** 대기관리권역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」(가칭) 제정 추진(17.下~'18)
 - * ①당진·태안 등 충청권 ②울산·창원 등 동남권 ③여수·광양 등 광양만권

VI

소요예산 및 이행체계

1. 소요예산

- □ '22년까지 미세먼지 감축, 민감층 보호 등에 총 7.2조원 투입
 - 연도별로는 '17~'18년 2.2조원, '19~'22년 5.0조원 소요 ※ 종전 대책 소요예산 : 5.3조원 규모('16~'20, 환경부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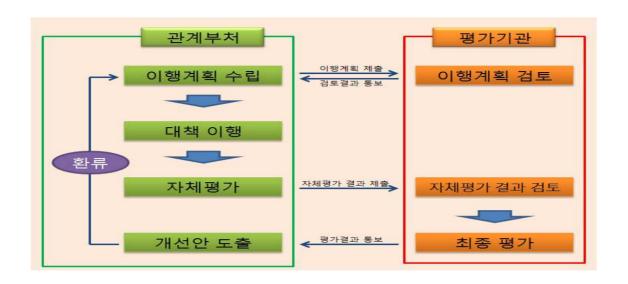
2. 이행점검 · 평가

□ 기관별 역할

- (평가기관) 국무조정실이 총괄하여 점검·평가(간사 : 환경부)
- (관계부처·기관) 매년 이행계획 수립 및 평가를 받는 기관
 - 이행계획 수립, 자체평가, 결과 환류, 이행계획 개선 등

□ 평가 및 환류

- (개념) 관계부처별 이행계획 수립 ⇒ 평가 ⇒ 환류 順으로 진행
- (평가주기) 이행실적 평가(매년), 중간·종합보고서('20, '22년) 평가
- (평가절차) 미세먼지 감축실적을 포함한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부처별 자체평가 후 평가기관이 최종 점검·평가
- (평가결과 환류) 점검·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대책 수정·보완
 - 감축효과 등 실효성이 부족한 과제는 내용을 강화·보완하고, 필요시 신규과제를 발굴·추가



□ 민·관 합동 거버넌스 구축

- (역할) '미세먼지 민·관 대책 위원회(가칭)'를 구성,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범사회적인 협의체로서의 역할 수행
 - 대책 이행상황 공론화, 신규 과제 제안, 시민 실천 프로그램 발굴· 실행 등을 실시
 - 위원회를 통해 미세먼지 대책의 지속적 보완·발전 추진
- (구성) 발전, 자동차, 산업 등 주요 분야 전문가 및 시민활동가 등 총 20명(위원장 호선, 여성 위원 6명 포함)
 - 필요시 관련 전문가 등을 추가하거나 외부 전문가 발제 등 실시
- (운영) 분기별 논의과제를 설정하여 전체 협의회 위원이 참석하는 정기회의에서 발제·토론 실시(분기별 1회)
 - ※ 산업부, 국토부, 교육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(실・국장급)도 참여

참고 1 지표로 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

종 합 지 표

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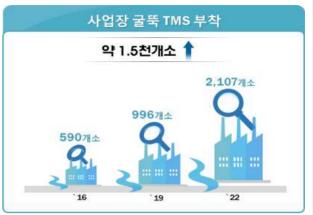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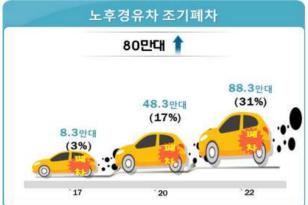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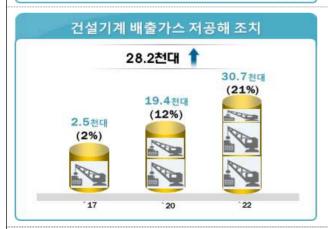
세부지표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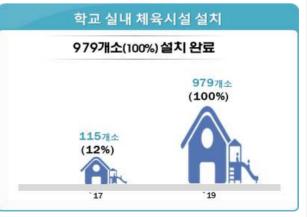












참고 2 종전 6.3대책과 금번 종합대책 비교

구 분		종전 6·3대책		금번 종합대책
감축목표		• '21년 국내배출 <mark>14% ↓</mark>		• '22년 국내배출 30% ↓
발전	석탄 발전	• 신규 석탄발전 설치 원칙적 금지 • 신규 석탄발전 배출기준 강화		 공정률 낮은 석탄발전(9기) 원점 재검토로 4기 LNG로 전환(<mark>强</mark>) 노후발전소 봄철(3~6월) 가동 중단 및 임기내 조기폐지(新)
	재생 에너지	• ´25년 11%로 확대		•´30년 20%로 확대(<mark>强</mark>)
	먼지관리	-		• 먼지총량제 시행(新)
산업	배출 부과금	• NOx 배출부과금 신설 검토		• NOx 배출부과금 신설(强)
	총량관리	• 수도권 총량관리		• 수도권 外 총량관리 지역 확대 (충청·동남·광양만권)(<mark>强</mark>)
	친환경차	• 전기차 등 보급		• 친환경차 보급 확대(<mark>强</mark>) • 친환경차 협력금제(新)
수송	선박· 건설기계· 이륜차	• 건설기계 배출 저감		 선박·항만 관리 강화(新) 건설기계 저공해화 확대(强) 이륜차 관리 강화 및 전기 이륜차 보급(新)
	노후 경유차	• 수도권 운행제한		• 운행제한 지역 확대(충청·동남· 광양만권)(<mark>强</mark>)
	환경기준	-		• 미세먼지 환경기준 선진화(新) • 민감계층 살내미세먼지 기준 신설(新)
민감 계층	인프라 확충	• 미세먼지 측정망 확대		교육시설 인근 측정망 확충(强)실내체육시설 설치(新)
/1 ·o ·	교육·환경 서비스	• 매뉴얼 마련 및 교육·홍보		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 전환(新) 민감계층 찾아가는 케어서비스(新) 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 지정 제도 도입(新)
국제	의제 격상	• 한·중·일 환경장관		• 한·중 정상회담(<u>强</u>)
국제 협력	협약 체결	-		•미세먼지 저감 국제협약 체결 적극 검토(新)

※ (强) : 기존대책 강화, (新) : 신규대책

참고 3 단계별 이행계획

	단계 1. 준비		단계 2. 이행	_	단계 3. 목표달성
	′17~′18.上		′18.下~′20		´21~´22
국내 배출량 30% 저감	■봄철 노후 火電 셧다운(17.6~) ■사업장 점검 강화(계속) ■다량배출 사업장(석탄발전, 철강, 석유 등) 기준 강화(18.上) ■수도권 먼지총랑제 시행(18.上) ■운행경유차 매연 배출허용 기준 강화(18.上) ■신규경유차 실도로 조건 NOx 배출기준 신설(17.9월) ■건설공사장 비산먼지 집중 점검(계속)		■SRF 관리기준 강화(´18) ■발전용 에너지 세율체계 조정 검토 ■수도권外 총량제 시행 ■사업장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제 신설(´18.下) ■친환경차협력금제 시행방안 확정(´19) ■수도권 대기관리권역 전역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(´20.下) ■선박 연료 황 함량기준 강화(´20)		■노후 석탄발전소 7기 폐지(~´22) ■친환경차 200만대 보급(~´22) ■노후 건설기계 3.1만대 저공해화(~´22) ■항만내 이동식 하역 장비 LNG 전환(~´22) ■도로 청소차 보급 확대(~´22)
국제 협력 강화	■한·중 공동연구 및 기술 지원(계속)	\Box	■한·중 정상회담 및 공동선 언문 발표 추진(´18∼´19)	\Diamond	■동아시아 미세먼지 협약 체결 적극 검토(´21)
민감 계충 보호	■미세먼지 환경기준 강화(18) ■학교 주변 측정망 확충 ('22년까지 총 505개소) ■실내 체육시설 설치(~'19) ■어린이 마스크 지원('17~) ■민감질환 감시 및 알림서비스 체계 구축('18년 시범사업)		 ■민감계층시설 실내 미세 먼지 유지기준 신설('20) ■비상저감조치 수도권外 확대('19) ■미세먼지 청정관리구역 지정('19) 		■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차(LPG차 등) 전환(~´22)
정책 기반 및 인 <u>프</u> 라 구축	 ■미세먼지 국가전략프로젝트 추진(´17~´19) ●한국형 대기질 예측시스템 개발(´17~´22) ■배출량 조사·연구 강화(계속) 		 ■미세먼지 종합정보센터 설치(19) ■환경위성 발사('20) ■「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 특별법」등 법령 제정 추진('18) 		■환경위성 활용 미세 먼지 측정(´21) ■인공지능(AI)기반 미세먼지 예보시스템 구축(´21)